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 소속기관에 공관 사건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중 39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11.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교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대한민국재외공관)	13명
2)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대한민국재외공관)	15명
3)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대한민국재외공관)	8명
4)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대한민국재외공관)	7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8